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인 「별표2」 8호 가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5월이상 7월미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액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2.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